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 등의 직능인에 대한 지원 시책 마련 의무화 등〉
■ 김종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759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종양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03. 10.
3. 회 부 일 : 2025. 03.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상 전문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전문 직능분야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신지식 및 신기술을 습득하고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직능단체연합회를 설립하고 직능인에 대한 교육·연수와 직능단체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능인 및 직능단체에 대한 행정적·경제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부재하여 직능인의 실질적인 경제활동 및 직능단체연합회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능인 및 직능단체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능인 등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

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6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직능인들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능단체 연합회(이하 ‘연합회’라고 함)의 업무 수행 및 직능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능인들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u>
<신설>	<u>제6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에 따른 연합회의 업무 수행 및 제6조에 따른 직능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직능인 및 직능단체의 공동 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직능인의 경제활동 촉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¹⁾, 연합회가 직능인에 대한 교육·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

그런데 연합회의 업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직능인의 실질적인 경제활동 및 연합회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합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직능인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1)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직능단체 연합회의 설립 등) ① 직능인 및 직능단체의 공동 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직능인의 경제활동 촉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직능단체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 및 지부를 둘 수 있다.

④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⑥ 연합회의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5조(연합회의 업무)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능인의 의식개혁 및 신지식인·신기술인 양성을 위한 교육·연수
2. 직능인에 대한 정보 제공
3. 직능인의 경제활동 현황 및 실태 조사
4. 직능인의 자질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
5. 직능단체 간의 공익사업 통합·조정
6. 직능단체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
7. 외국 직능단체와의 협력
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직능인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

다만, 직능인의 정의가 포괄적으로 규정³⁾되어 있어 개별 직능인 별로 경제활동의 형태가 다양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능인들을 위한 구체적 시책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⁴⁾과, 연합회의 경우 새마을운동중앙회·한국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 같이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 공동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⁵⁾.

참고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직능인이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어 지원대상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지원과 중복될 우려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8

3)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능인”이란 직업상 전문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전문 직능분야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직능단체”란 각 전문 직능분야에서의 활동을 위하여 직능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4) 2024년 기준 직능단체는 외식업중앙회, 세탁업중앙회, 자동차기술인연합회 등 199개 단체에 회원수는 약 424만명임.

5)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직능단체 연합회의 설립 등) ① 직능인 및 직능단체의 공동 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직능인의 경제활동 촉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직능단체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 출처 :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 단체연혁

- '99.12.07 (사)한국직능단체총연합회 설립
- '02.11.11 (사)대한법인직능단체총연합회 설립
- '04.03.22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7202호)
- '05.09.13 (사)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법인 설립 허가(행정안전부)

※ 사단법인 한국직능단체총연합회('99.12.7. 설립)와 사단법인 대한법인직능단체총연합회('02.11.11. 설립)를 해산하고 통합법인 설립

□ 조직개요

- 대표자 : 신상호('20.03.12. 취임)
- 임 원 : 35명 (총회장 1, 수석부회장 14, 상임부회장 18, 감사 2)
- 기 구 :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조직위원회, 교육위원회, 정책위원회 사무국
- 회원사 : 199개 단체(회원수 약424만명) / 경제단체(165개), 비경제(34개)

□ 주요사업

- 직능인의 의식개혁 및 신지식인·신기술인의 양성을 위한 교육·연수
- 직능인의 경제활동 현황 및 실태 조사
- 직능단체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

□ 예산 현황

2020	2021	2022	2023	2024
45,110천 원	416,600천 원	359,650천 원	217,729천 원	124,366천 원